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차해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10
----------	-------

발의연월일 : 2023. 2.

발 의 자 : 차해영, 권영숙, 김영미
남해석, 신종갑, 오옥자
이상원, 이한동, 장정희
채우진, 최은하, 한선미
홍지광

1. 제안이유

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마포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 나. 토론회 등 운영원칙, 신청 및 승인, 지원 및 관리 (안 제3조~제5조)
- 다. 진행 및 관계 기관 등의 협조요청 (안 제6조, 안 제7조)
- 라. 결과의 반영 및 실비보상 (안 제8조, 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 다. 입법예고: 2023. 2. 1. ~ 2023. 2. 5.
- 라. 조례안: 붙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간담회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마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립된 구민의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의 개최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관리) ① 토론회 등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의회사무국에서 한다.

② 의회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토론회 등 진행에 관한 사항

제6조(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주최하는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결과반영 등) ①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과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론회 등 개최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	직 위 :
	소 속 :	연락처 :

행 사 명			
목 적			
일시/장소		참석인원	
기대효과			
<input type="checkbox"/> 주요내용			

년 월 일

신청인 : (인)

마포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일시/장소	
발제자와 토론자 명단	
토 론 진 행사 항	
그 밖의 사항	
비 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5조(지원 및 관리) ① 토론회 등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의회사무국에서 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의회사무국 의사팀 최은영
연 락 처	02-3153-6174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